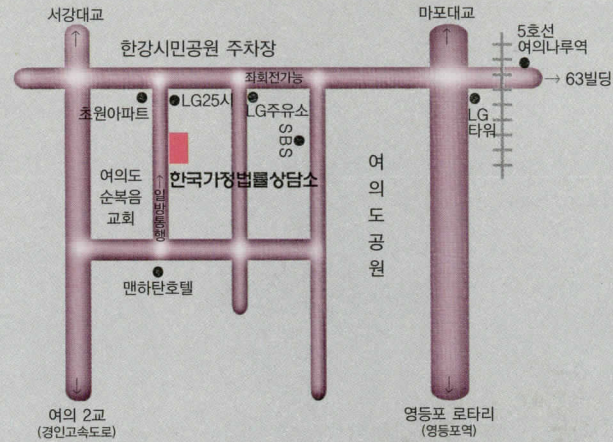




교통편 지하철 : 5호선 여의나루역에서 하차(도보로 10분거리)
일반버스 : 3, 30, 145, 9, 119, 326, 133-2
좌석버스 : 72-1, 30, 1002

지부연락처

강릉지부 (033) 646-9556	원주지부 (033) 731-4336
거제지부 (055) 681-7860	익산지부 (063) 851-0265
군산지부 (063) 442-1560	인천지부 (032) 438-1114
광주지부 (062) 527-0011	전주지부 (063) 244-2930
대구지부 (053) 745-4501	정읍지부 (063) 535-3705
대전지부 (042) 520-5258	제주지부 (064) 756-4006
동해지부 (033) 535-0188	진주시부 (055) 746-7988
목포지부 (061) 273-2514	춘천지부 (033) 257-4688
부천시부 (032) 667-2314	태백지부 (033) 554-4003
청주시부 (043) 257-0088	평택·안성지부 (031) 611-4251
수원지부 (031) 243-4600	동두천지부 (031) 866-0009
성남지부 (031) 707-6661	구리지부 (031) 551-9976
신당동지부 (02) 2238-6554	창원·마산지부 (055) 261-0280
안동지부 (054) 856-4200	천안지부 (041) 577-3680
울산지부 (052) 246-9568	

호주제 바로알기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50-86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1-13 여성백인화관

전화 780-5688~9 / 782-3427 전송 780-0485

e-mail webmaster@lawhome.or.kr 홈페이지 http://www.lawhome.or.kr

호주제, 없어도 됩니다. 어떻게?



● 기본가족별 편제 ●

기존의 호적제도는 관념적 가족단체인 가(家)를 중심으로 편제되었으나 기본가족별 편제방식은 부부와 미혼자녀를 기본단위로하여 호주를 없애고 부부의 성명을 모두 기재하여 새로운 호적(또는 새로운 신분등록부)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혼할 경우 부부의 호적은 분적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는 친권자로 지정된 부모와 호적을 함께 합니다 재혼의 경우도 초혼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호적을 편제하며, 미혼인 성인 자녀와 미혼부 모는 일가를 창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호주제 폐지는 가족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등한 가족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호주제 폐지가 가족을 해체시킬 뿐만 아니라, 호적 사무에 많은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호주제 폐지를 통해 비로소 평등한 가족으로 살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지 않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새로운 호적 편제 방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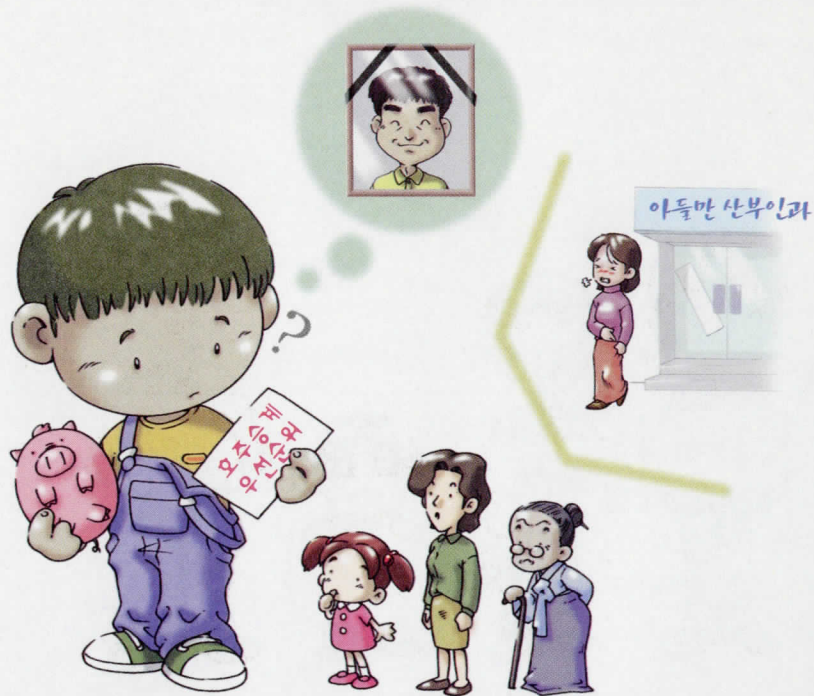


● 개인별 편제 ●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호적(또는 새로운 신분등록부)을 갖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가족관계가 다양해지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고려하면 개인존중이념을 뿌리내릴 수 있는 가장 미래지향적인 방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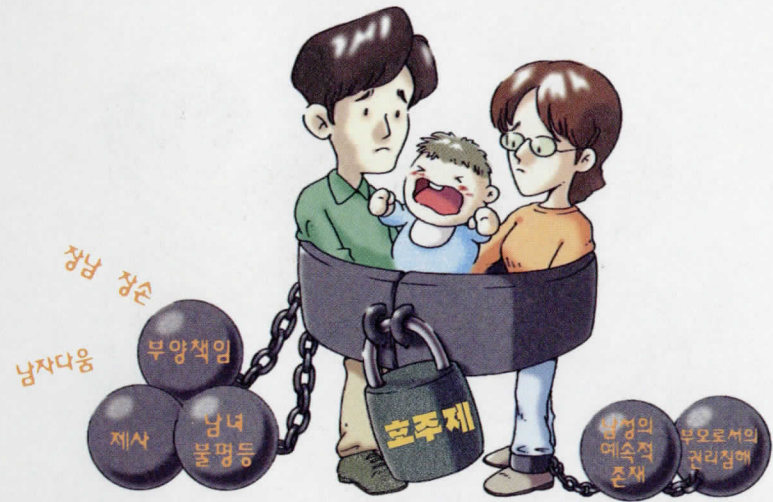
두 안 모두 자녀의 성은 부모가 합의해서 부 또는 모의 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합니다.

호주제는 없애야 합니다. 왜?



호주제는 **남녀평등을 저해**합니다.

호주제는 부계 우선 혈통주의와 남성 우월의식을 조장함으로써 성차별을 발생시킵니다. 민법은 호주승계 순위에 대하여 아들-딸-처-어머니-며느리의 순으로 규정하여(민법 제984조) 남자를 우선 순위로 하고 남자가 없는 경우에 비로소 가족인 여자가 2차적으로 승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혼인 외의 아들이 있는 경우 딸은 호주승계순위에서 밀리게 되고 또 어린 아들이 어머니 누나, 할머니 등에 우선하여 호주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로 여성을 차별하는 제도이며, 남성우월을 상징함으로써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들선호사상으로 인한 선택적 낙태의 결과 심각한 성비불균형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주제는 **평등한 가족관계에 위배**됩니다.

호주제는 부부의 평등권과 여성의 부모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현대판 '삼종지도'로 여성을 남성의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출생하면서 부(父)가에 입적하여야 하고 다른 집으로 입양되거나 혼인 등으로 분가하지 않는 한 아버지의 호적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민법 제781조 제1항). 여성의 경우 혼인하면 부(夫)가에 입적함으로써(민법 제826조 제3항) 소위 출가외인이 됩니다. 따라서 여성은 혼인 전에는 아버지가 호주인 호적에, 결혼하면 남편이 호주인 호적에, 남편이 사망하면 친가복적이거나 일가창립을 하지않는 이상 아들이 호주로 되어 있는 호적에 올라야 하는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